

예산총칙

2021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76,391,247	23,291,737
일반회계	706,831,817	21,204,955
특별회계	69,559,430	2,086,783
공기업특별회계	36,132,196	1,083,96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1,682,000	650,46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450,196	433,506
기타특별회계	33,427,234	1,002,81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857,889	115,73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881,702	86,451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361,176	10,835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603,427	48,103
사천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4,432,000	132,96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25,000	6,750
도시개발특별회계	5,646,530	169,396
지하수관리특별회계	344,100	10,323
중포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406,653	12,200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4,020,695	120,621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837,905	85,137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6,810,157	204,30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608,925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8,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특정목적기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성립전집행)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